

審 査 報 告 書

1. 審 査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11. 5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11. 6
- 라. 上程日字 : 1998. 11. 11

2. 提 案 說 明 要 旨 (提 案 說 明: 自 治 行 政 課 長 方 景 泰)

가. 提 案 理 由

-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의 「별정직공무원의 직명 표준화 권고안」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방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 별정직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主 要 骨 子

-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함.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사항중
 - 농기계교관 요원 ⇒ 농기계 교육교관
 - 위 생 관 리 원 ⇒ 보건위생감시원
 - 문화재 전문요원 ⇒ 문화재 관리요원으로 명칭변경하고,
 -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여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의
2에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을 신설함.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부칙으로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4조중 “농
업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개정하는 것임.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동 개정조례안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통합하여
 -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 그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 직렬로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따라서, 관련 조례를 통합개정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13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 . (제 회)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11. 6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 : 1999. 11. 8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개정이유

- 2단계 구조조정지침 별정직공무원 직명 표준화 권고안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 도의 조례운용 개선방안에 따라 별정직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통합하고, 제명을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함.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문화재관리요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농기계교육교관, 비서, 보건진료원, 보건위생감시원, 공기업회계요원, 의회전문위원”으로 지정함(안 제2조의2).
-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동조제4항
- 충청남도 행정 12200-1726('99. 6. 15)호
 - 2단계 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
- 충청남도 행정 12200-283('99. 9. 30)호
 - 지방별정직공무원관련조례운용 개선방안 시달
- 충청남도 행정 12200-341('99. 10. 8)호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문화재관리요원
2. 아동복지지도원
3. 여성복지상담원
4. 농기계교육교관
5. 비서
6. 보건진료원
7. 보건위생감시원

8. 공기업회계요원

9. 의회전문위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농업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p>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p> <p>② (생략)</p> <p>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신설></p>	<p>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p> <p>-----</p> <p>제2조(적용범위) ①----- -----별정직공무원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관리요원 2. 아동복지지도원 3. 여성복지상담원 4. 농기계교육교관

현 행	개 정 안
	<p>5. <u>비서</u></p> <p>6. <u>보건진료원</u></p> <p>7. <u>보건위생감시원</u></p> <p>8. <u>공기업회계요원</u></p> <p>9. <u>의회전문위원</u></p>

신·구조문 대비표

(다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 조례</p> <p>제4조(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지도사 1명, <u>농업기계</u> <u>교관</u> 1명(농업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자), 운전원 1명을 1 개 반으로 편성, 운영 관리한다.</p>	<p>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 조례</p> <p>제4조(수리반 편성) ----- -----<u>농기계교</u> <u>육교관</u> ----- ----- -----</p>